

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

(의견서 번호 : 24-4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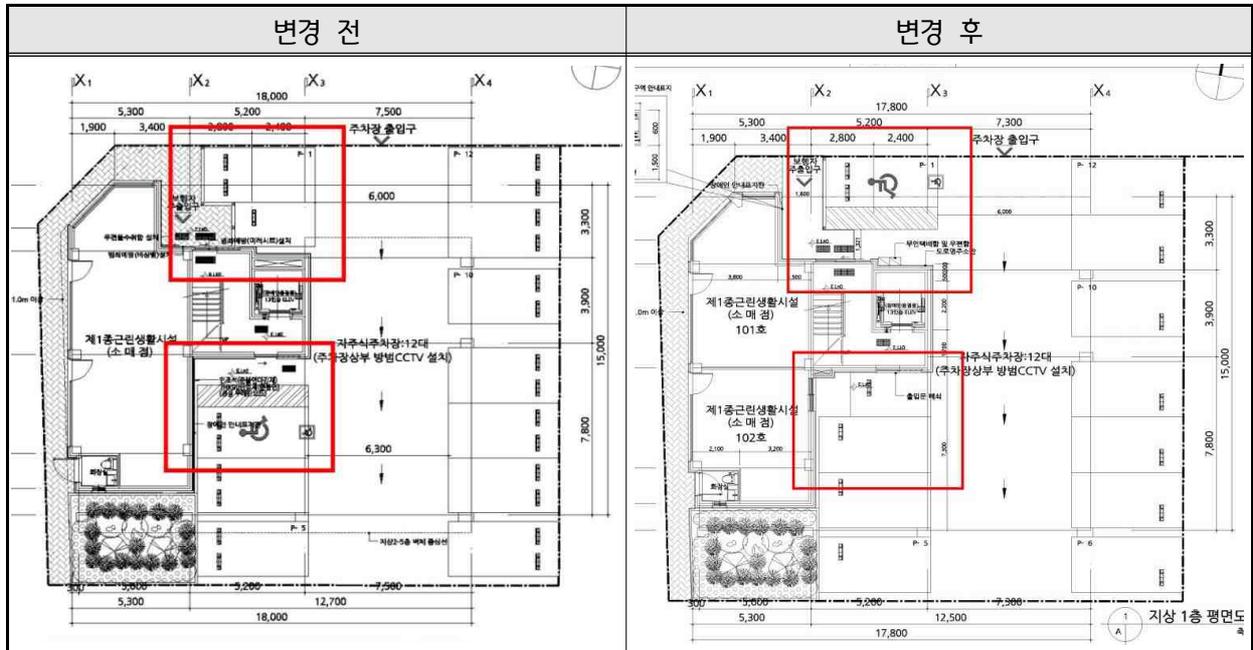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관 및 부서명 |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|
| 건 명 |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빗금 부분의 피난·소화 통로 인정 여부 |

1. 사업 개요(추진일정 등)

○ 대상 건축물 개요

- 위 치 : 00시 00구 00동 1xxx(대지면적 4xx.Xm²)
- 규 모 : 연면적 7xx.xxm², 지상 x층(근생 x호, 주택 1x세대)
- 주차장 : 총 12대(장애인전용 1대, 경형 1대, 일반형 10대)

○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신청(주차계획 변경)



2.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(특별)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(이하, '피난·소화 통로'라 함)를 설치하여야 하고,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의 경우는 그 유효 너비를 1.5미터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함.
- 그리고, 「주차장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3.3미터 이상, 길이 5.0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.
- 이 사안은 당초 대상 건축물의 주된 출구 앞쪽으로 피난·소화 통로와 경형 주차장(폭

2.0미터) 및 일반형 주차장(폭 2.5미터) 각각 1대가 직각주차로 접하여 위치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(1대)은 대지의 다른 위치에 있었으나,

- 민원인(건축주)은 기존 경형 주차장 및 일반형 주차장과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위치를 바꾸면서 건축물 주된 출구 앞쪽에 장애인전용주차장 1대를 직각주차로 계획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였고,
- OO시(OO구청)는 건축물 출구 앞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제외한 부분의 너비가 약 1.3미터로 피난·소화 통로 유효 너비인 1.5미터에 미달되므로 그 이상을 확보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으나,

○ 민원인은 변경 계획된 통로의 너비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내 1미터의 보행로(빗금 부분)*를 포함하면 2.3미터가 되므로 피난·소화 통로로 요구되는 유효 너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.

* 「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 제4호 다목 (1) 예시 그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(너비 3.3미터) 중 너비 1미터 부분으로, OO시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해당 부분을 ‘보행로’로 기재하였지만 장애인등편의법 등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 명칭이나 설명이 없으므로 ‘빗금 부분’으로 명명함.

3. 검토의견

○ 이 사안은 민원인(건축주)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,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피난·소화통로의 유효 너비 일부를 부설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빗금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임.
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1조 제1항에 따른 피난·소화 통로는 이용자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에 적합한 유효 너비가 항상 확보되어야 하는데,

- 주차구역(구획)에는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거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둘 수 있으므로(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6호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제24호) 피난·소화 통로가 주차 구역(구역)의 일부에라도 설치하게 된다면, 유사시 피난·소화 통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임.

○ 아울러, 피난·소화 통로를 주차구획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사례는,

- ‘주차구획이 계획되어 차량이 주차될 경우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합’(FAQ, ’22.06.21.) 또는 ‘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는 주차시 차량이 위치하는 주차구획부분 등과 같은 장애가 없어야 하는 것’(전자민원처리공개, ’08.04.22.)으로 설명하고 있음.

○ 이 사안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(평행주차형식 외)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 제1항

제2호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[별표 1] 제4호 나목 (1)에서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른 주차단위구획과 너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.

- 그리고,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[별표 1] 제4호 다목 (1)에 따라 예시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, 그 그림의 빗금 부분에 휠체어가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,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빗금 부분이 반드시 휠체어 등의 이동 통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빗금 부분에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,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통한 장애인 탑승하차 위치나 주차 방향 등 이용자 편의에 따라 빗금 부분을 포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전부에 주차가 가능한 바,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1조 제1항에 따른 피난·소화 통로의 유효 너비에 장애인주차구역 내 빗금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면,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피난 및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.

■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,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